

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제27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제출 안내

1. 서울특별시의회 의사담당관-95(2018. 1. 9.)호와 관련입니다.
2. '18. 4. 4.(수) 개회 예정인 제27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이 있는 부서에서는 '18. 3. 8.(목)까지 기획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대상 :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모든 안건(조례안, 동의안, 의견청취안 등)

- ※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 하므로 법무담당관(법제심사팀)과 사전 협의
- ※민간위탁 동의안은 조직담당관과 사전 협의

〈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〉	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	
①	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②	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 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③	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 해야 한다.

내용 : 안건 및 검토의견서

민간위탁 동의안은 성과보고서 첨부(단, 신규위탁은 제외)

방법 : 공문시행(단, 조례의 경우 법무담당관에서 일괄제출)

- 의안은 사전공고 실시(지방자치법 제46조) 후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(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)해야 하므로, 각 부서는 제출 기한 엄수

라. 향후 조치사항

- 의사담당관 : 의안번호 및 제출일자를 기획담당관에 통보
- 소 관 부 서 : 의안번호 및 제출일자를 안건에 기재한 후 인쇄 및 제출
- ※ 소관 상임위원회(40부) 제출(제출수량 변경 가능)

- 붙 임 : 1. 안건제출 작성서식 1부.
2. 검토의견서 작성서식 1부.
3.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유의사항 및 성과보고서 작성양식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관과01-154, 서사01-41, 서울시출자출연기관, 서울시투자기관

주무관

이현중

의회협력팀장

김형태

기획담당관

02/23
박진영

협조자

시행 기획담당관-2605 (2018.02.23.) 접수 (2018.02.26.)
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(태평로1가) / lhj02@seoul.go.kr
전화 02-2133-6633 전송 02-2133-0818 / lhj02@seoul.go.kr / 대시민공개